



1. 선박제원		(기재번호 : 1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선박명	한려페리7호	
선박번호	YSR-182817	
총톤수	212톤	
진수일자	2018년 04월 23일	
선적항	여수시	
선질	강	
선박용도	차도선	
등록치수 (길이×너비×깊이)	39.79×9.20×2.50 m	
기관종류 및 출력	디젤기관 609KW(829 PS) × 1,900RPM : 2기	
최대승선인원	총 233 명 (여객 : 230 명, 선원 : 3 명, 임시승선자 : 0 명)	
선박소유자	(주)신아해운 (국적 : 대한민국 )	
운항사업자	(주)신아해운(국적 : 대한민국 )	
선박국적	대한민국	
기재일자	2018 년 08 월 06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
사업자 (주) 신아해운 (인)		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2/8)

2. 선박의 도입 및 매매		(기재번호 : 2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매수일자	년 월 일	
매도자	( 국적 : 대한민국 )	
신조선·중고선 여부		
선박 도입 당시 선령		
선박의 매매		
매도일자	년 월 일	
매수자		
기재일자	년 월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
사업자 (주) 신아해운 (인)		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3/8)

3.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		(기재번호 : 3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항로명	여수 - 함구미 / 백야 - 직포	
항해구역	평수/연해	
출발지/기항지/종착지	(여수항) 여수-제도-개도-자봉-송고-함구미 (백야항) 백야-개도-함구미-직포	
운항기간	2018 년 06 월 07일 ~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
기재일자	2018 년 08 월 06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
사업자    (주) 신아해운    (인)		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4/8)

4.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		(기재번호 : 4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최초정기검사		
검사일자	2018년 05 월 24 일	
검사기관	KST(선박안전기술공단)	
검사자	선체 : 하 권 진 검사관 / 기관 : 류종호.황원설 검사관	
검사결과	이상없음	
기재일자	2018 년 08 월 06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
사업자    (주) 신아해운    (인)		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5/8)

5. 해상사고 이력  
 ※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

(기재번호 : 7 )

해양 사고 종류	가. 선박의 구조·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
	나.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·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
	다. 선박이 멸실·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
	라. 선박이 충돌·좌초·전복·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
	마.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

기재항목	-
사고일자	-
해양사고 종류	-
사고장소	-
사고경위	-
피해규모	-
기재일자	년    월    일
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 
사업자 (주) 신아해운 (인)

6. 선박개조 이력 ※ 「선박안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	(기재번호 : 8 )
---	-------------

기재항목	기재사항		
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일자	년	월	일
허 가 자			
변경내용	변경 전		
	변경 후		
기재일자	년	월	일
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사업자    (주) 신아해운    (인)

## 기재 시 참고사항

1. 이 서식의 기재사항은 사업자 외의 자가 수정·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내용은 한글(필요시 영문 병기)로 작성하여야 한다.
2.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작성 후, 각 호의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부여하여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한다.
3.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새로운 기재번호를 부여하고,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  
※기재번호 예시 : 1, 2, 3, ~
4. 선박명(선박번호)의 변경으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를 새로 작성할 경우 위 2내지 3의 방법을 따르되 제1쪽에 변경된 선박명(선박번호) 및 사유를 기록한다.  
※선박번호는 국적증서상의 숫자 여섯 자리만 기록한다.
5. 사업자는 선박 및 사무소에 최초 및 개정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기록·보관하여 개정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6.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